부패·공익 신고

조 사 보 고 서

- 시각예술창작산실 (부패·공익) 제보 -

2023. 4.

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

목 차

Ⅰ. 조사 개요 ····· 1

1. 조사 배경 및 목적 ····· 1

2. 조사 기간 ····· 1

Ⅱ. 제보 내용 ····· 2

1. 보조사업자가 개인 통장으로 보조금 일부 페이백 요청 ····· 2

2. 사업담당자의 부적절한 민원 신고 업무처리 ····· 2

Ⅲ. 관련 법령 및 규정 ····· 3

Ⅳ. 조사 결과 ····· 5

1. 총 괄 ····· 5

2. 조사 결과 ····· 6

별첨 1. 처분요구서

2. 증거자료

Ⅰ. 조사 개요

1. 조사 배경 및 목적

□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유용·부당 취득하였다는 부패·공익 신고 접수 (청렴포털)

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(이하 ‘예술위원회 ’) 사업담당자가 제보자의 최초 신고를 고의적으로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고 조사 요구

2. 조사 기간

□ 조사인원 : D 차장

□ 조사기간

ㅇ 2023.02.06.~02.22. : 예비조사

ㅇ 2023.03.07.~03.09. : 실지조사

3. 조사 대상 및 조사 범위

□ 조사 대상

ㅇ 피신고자 1 : 보조사업자 A

ㅇ 피신고자 2 : ◇ 과장 B

□ 조사 범위

ㅇ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당 취득 여부

- 2022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(비평지원) 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의 사례비 일부를 부당 취득(페이백)한 혐의

ㅇ 최초 부패·공익 신고 시 사업담당자의 신고 처리의 적정성

- 신고 처리 준수 등 적법성 및 타당성 등

Ⅱ. 제보 내용

1. 보조사업자가 개인 통장으로 보조금 일부 페이백 요청

ㅇ 202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시각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 분야 사업 <△△ : 000 00000 0000>에서 보조금 수령자인 C(민원인)의 행정인력 사례비로 지급된 금액(1,800,000원)의 절반인 900,000원을 보조사업자(A)가 개인 통장으로 페이백 요청하여 부당하게 편취 함.

2. 사업담당자의 부적절한 민원신고 업무처리

ㅇ 보조금수령자 C(제보자)은 예술위원회 ◇ 사업담당자(B)에게 보조사업자 A가 본인에게 지급된 행정인력 사례비 중 절반을 되돌려 줄 것(페이백)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감사를 요청하였으나,

ㅇ 예술위원회 사업담당자는 감사는 불가능하다며, □에 권리보호 신청을 하라며 잘못된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등 민원신고 절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고 주장,

ㅇ 동시에 보조사업자 A에게 본인과의 계약서를 다시 쓰도록 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등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담당자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요청

Ⅲ. 관련 법령 및 규정

▶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'보조금법')

제22조(용도 외 사용 금지)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5조(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)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30조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)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2.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3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
제33조(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) ① 중앙관서의 장,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2.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
제4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1.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
▶ 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(이하 '보조금 운영규정')

제5조(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) ①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장, 보조사업자,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부정수급 실태점검
2. 보조사업 수행 상황을 위원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
3.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

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④ 보조금수령자는「보조금법」및「보조금법 시행령」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조건 또는 위원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9조(용도 외 사용 금지) ①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,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조건, 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0조(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) ② 위원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한다.

3.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

제46조(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) ① 위원장,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2.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
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「보조금법 시행령」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▶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공공재정환수법')

제13조(조사의 실시 등)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·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 등과 관련된 자(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출석,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출석,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의 사무소·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·시설·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출석, 진술,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출입 등의 방법·절차에 관하여는「행정조사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▶ 교부결정통지서 - A / 관련 문서 근거 : ◇-868(2022.5.2.)

4. 교부조건

나. 보조사업자 등은 사업내용 및 예산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, 중요한 변경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Ⅳ. 조사 결과

1. 총 괄

1. 주요 결과

가.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페이백을 통한 부당 취득

○ 보조사업자 A는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행정인력 사례비를 보조금수령자에게 집행하면서 서면계약서에 명시된 금액(1,800,000원)으로 선지급한 후 일부 금액(900,000원)을 되돌려받아 보조금을 부당 취득한 사실 적발

- 부당 취득 일자(2022.12.5.) : 보조사업자 개인 계좌(신한)로 900,000원

나. 사업담당자의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

○ 위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◇ 사업담당자(B)는 보조금수령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이를 소홀히 하였다. 또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타 기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한 사실과 이로 인한 사업담당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음

2. 조치할 사항

○ 보조금을 부당 취득(페이백)한 보조사업자에게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, 제30조제1항제3호 및 「보조금 운영규정」 제19조제1항, 교부결정서(◇-868, 교보조건)를 위반하여 부당 취득한 금액 전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하고,

(시정(환수))

○ 사업담당자는 동법 제25조제2항 및 「보조금 운영규정」 제5조 및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조금 조사 및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, □으로 신고하도록 민원인에게 잘못 안내한 사업담당자에게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주의를 촉구하시고,**(주의(훈계)**

○ 또한 부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된 민원 발생 시 「보조금 관리법」, 「보조금 운영규정」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. **(통보)**

3. 처분요구

계	시정(환수)	주의(훈계)	통보
3건	900,000원	1명	1건

2. 조사 결과

가.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페이백을 통한 부정 취득

○ 보조사업자 A는 보조금수령자 C을 <2022년 시각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 분야의 지원사업>의 행정인력으로 2022.5.23. 서면계약을 통해 채용하였고, 행정인력 사례비 1,800,000원을 2022.5.24.에 지급하였다.

○ 이후 A는 C에게 지급한 사례비 중 절반을 본인에게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고, C은 2022.1.5. A 개인 통장(ㄴ)으로 900,000원을 입금하였다.

○ A는 C과 상호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,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한 사례비 일부를 되돌려받는 행위(페이백)는 「보조금법」 제22조제1항, 제30조제1항제3호 및 예술위원회 「보조금 운영규정」을 위반한 행위이다.

○ A는 보조사업자로서 「보조금법」 제22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,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고하고 보조사업 후 집행잔액 등을 성실히 반납하여야 한다.

[표 2] 2022년도 e-나라도움 시스템 집행 내역

집행 일자	집행상태	집행구분	증빙구분	주민등록번호/사업자등록번호	거래처명	집행용도	집행 금액	보조세목명
2022.05.24	이체완료	일반집행	기타	860412-1***	C	행정인력인건비	1,740,600	운영비(일반)

나. 사업담당자의 보조금 위반행위 신고 처리 등 사업 관리 부적정

○ 사업담당자는 민원신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당 취득 (페이백)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였으나, 이를 예술인 권리침해행위로 이해하고 □으로 신고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민원인으로부터 사업담당자의 업무 태도에 대한 감사를 요청받았다.

○ 사업담당자 B 과장은 사례비의 부당 취득(페이백)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법률과 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. 이는「보조금법」제25조제2항 및 「보조금 운영규정」제5조 및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조금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이다.

○ 또한 부서 내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양한 사례를 일괄적으로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로 판단하여 □으로의 안내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,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민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.